



교무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4-1-1
제정일자	1995. 3. 1.
개정일자	2024. 3. 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7.12.29개정>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의 장, 국제교류협력원장, 평생교육원장, 민주노총 대학노조 신안산대지부노동조합 대표1인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2009.5.20. 개정(학칙과 일치)> <2010.6.16.개정> <2017.12.29. 개정> <2021.08.20. 개정> <2022.06.02. 개정> <2022. 8. 11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 <2024. 3. 20. 개정>

제3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제4조(심의) ① 학교의 교육, 연구, 대학발전, 학생관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 <2009.5.20 개정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